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00
----------	-------

발의연월일 : 2026. 9. 28.

발 의 자 : 문진석·김우영·김한규
박정현·진선미·김문수
박지원·문대림·강경숙
백승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통해 국정 운영을 감시·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에 해당함. 이러한 권한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에 각종 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최근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국가기관이 타 법령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부장관은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국정 운영 감시·견제 기능을 내실 있게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거부하거나”를 “거부, 기피 또는 게을리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받은 주무부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허위 서류등 제출의 죄) 제2조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서류등을 제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을 “제12조·제13조·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14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 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 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 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u>거부하거나</u> 거짓으로 제 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 에 대한 조치요구) ① ----- ----- ----- -----거부, 기피 또는 게을 리하거나----- ----- ----- ----- ----- ----- -----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자에 대 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 도록 요구받은 주무부장관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 결과를 국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2(허위 서류등 제출의 죄) 제2조에 따른 서류등의 제 출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서 류등을 제출한 자는 7년 이하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u>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u> <u>본문의</u>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고발) ① ----- -----<u>제12조·제13조·제14조제1항</u> <u>본문</u> <u>또는 제14조의2</u>-----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